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안 번호	1467
----------	------

제출일자 : 2017. 11.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2018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 8,250천원

-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컨설팅, 지역축제·관광 홍보, 특산품 마케팅 지원, 마을경제 및 공동체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으로 설립
- 2017년 제5차 이사회 “2018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의결 (2017. 8. 30.)
- 출연금 산출 기초(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구 분	산출금액
배정기준	
○ 기초자치단체	
- 인구 30만명 이상 시·군: 13,750천원	
- 인구 30만명 이상 자치구: 11,000천원	
- <u>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시·군·구: 8,250천원</u>	8,250천원
-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5,500천원	

- 붙임 1. 출연심의 요구서 1부
2.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부
3. 출연기관 현황 1부. 끝.

출연 심의요구서

기관명	한국지역진홍재단																														
출연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장: 김기수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10-6 상영빌딩 4층 																														
출연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 예정금액 : 8,250천원(전액 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천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사업 기간</th> <th rowspan="2">2017년 예산액</th> <th rowspan="2">2018년 요구액</th> <th colspan="5">재 원 별</th> </tr> <tr> <th>계</th> <th>국비</th> <th>시비</th> <th>군비</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한국지역 진홍재단 출연금</td> <td>2018년</td> <td>8,250</td> <td>8,250</td> <td>8,250</td> <td></td> <td></td> <td>8,250</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사업 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한국지역 진홍재단 출연금	2018년	8,250	8,250	8,250			8,250	
구 분	사업 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한국지역 진홍재단 출연금	2018년	8,250	8,250	8,250			8,250																								
출연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과 지방 간 상생협력체제 구축 ○ 한국지역진홍재단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예산절감 효과 도모 ○ 지역특산품 판로 확대 추진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제18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홍재단 지원 조례 제2조 																														
사업부서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2017년 추진실적(전체 지자체)

-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한 기반조성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정책개발 및 위탁 사업 추진 등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 지역진흥 및 공동체 인재양성 추진
-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연구·컨설팅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및 향토자원 활용방안 연구 등
 - 지역축제·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진흥 사업 컨설팅
-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역진흥 홍보사업 추진
 - 지역 역사·문화, 관광명소 홍보방송 제작·방영
 - 축제·문화·관광·특산품 등 지역진흥 사례 대내외 홍보
 - 네이버 블로그 활용 중점 홍보
 - 전국관광지도 앱을 통한 지역 관광 축제 정보 제공
 - 서울 고속터미널역 내 지역홍보센터, 내고향 갤러리 운영
- 지역특산품 전시·홍보·판매 및 판로확대 지원
 - 지역특산품 상설판매장(상시), 직거래장터 운영
 - 쇼핑몰 ‘지역명품숍’ 운영
 - 지자체쇼핑몰 리뉴얼 및 위탁운영
- 지역발전사업 제안 및 위탁사업 추진
 - ‘청년희망뿌리단’ 추진사업 교육·컨설팅 추진 지원
 - 전국 마을기업 전수조사 및 DB구축
- 지역 축제·행사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 지역축제·행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자료 제공

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컨설팅, 지역축제·관광 홍보, 특산품 마케팅 지원, 마을경제 및 공동체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설립한 재단으로,
- 재단의 운영과 지자체의 지원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단의 정관에 따라 각 지자체 별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출연
- 이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과 관련된 우리 군의 마을기업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컨설팅 및 교육, 지역특산품 전시·홍보 판매 및 판로확대 등을 위해 우리 군이 배정받은 8,250천 원 출연은 필요함

출연기관 현황

기관명	한국지역진흥재단			전화번호	02-3496-2100		
				홈페이지	http://www.kolop.or.kr/		
설립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 8. 16.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 허가 ■ 2007. 8. 23. 한국지역진흥재단 개소 (지역홍보센터 오픈) ■ 2011. 7. 14. '지역정보포털'(oneclick.or.kr) 구축·운영 ■ 2012. 7. 16. '지역명품숍'(localbest.co.kr) 쇼핑몰 공식 오픈 ■ 2015. 6. 11. 마을공동체발전센터 신설 						
이사	구분		직위		비고		
	계		이사25명, 감사1명				
	이사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장				
	이사	한국지역진흥재단	상임이사				
	이사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				
	이사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이사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이사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이사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이사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이사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이사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이사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이사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이사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이사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이사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이사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이사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이사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이사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주요기능	이사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장				
	이사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군수				
	이사	울산광역시 중구	부구청장				
	이사	강원도 강릉시	부시장				
	이사	전라남도 고흥군	부군수				
	이사	경상남도 진주시	부시장				
	감사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		당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과 지방 간 상생협력 체제 구축 ○ 한국지역진흥재단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예산절감 효과 도모 ○ 지역특산품 판로 확대 추진 						
최근3년간 예산현황 (백만원)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재무현황 (2016. 12. 31. 기준)	자산	3,382
	예산액	3,783	4,539	4,314		부채	635
	출연금	2,600	2,600	129		자본	2,746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재정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